

고 시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583호

자양7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(일몰)기한 연장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268호(2018. 8. 30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된 자양7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기한을 연장하고, 같은 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고시합니다.

2024년 12월 5일
서울특별시 시장

1. 정비구역 해제(일몰)기한 연장 개요

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정비구역 지정·고시일	해제(일몰)기한	비고
당초	자양7 주택재건축 정비구역	광진구 자양동 464-40 일대	44,658.5	2018. 8. 30.	2024. 10. 12.	2년 연장
변경					2026. 10. 12.	

2. 정비구역 해제(일몰)기한 연장 사유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해제(일몰)기한 연장

3.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과(☎ 02-2133-7214) 및 광진구 주거사업과(☎ 02-450-9711)에 관계 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.